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 6 . 2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003. 5. 14 구미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합니다.

— 이 유 —

1. 재의조항 :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조제2항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2. 이 유

-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헌법 제11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할 수 없고, 일방의 고유권한을 타방이 행사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위배 됨.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그것이 견제의 범위안에 드는 경우에는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 함. (대법원 판례 1996. 5. 14)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정요구시에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구체적인 행정집행까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며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권한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 이며,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의거 임용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소속 직원에 대한 문책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작용에 대해 직접 간섭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범위의 한계를 일탈하여 불가능 하다고 사료되며, 권한없는 기관에서 행정집행에 직접 간여하는 것으로 행정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 우려되어 위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합니다